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이나영**·허민숙***

■ 국문초록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젠더폭력으로 명명하는 이 글은, 그간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대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젠더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일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 하에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남자다움의 젠더각본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혐오의 표출을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고 증명하는 도구이자, 이를 통해 다시 여성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제이다. 그러기에 젠더폭력은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지배적 젠더규범을 통해 여성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성차별적 문화, 개인의 안전이 붕괴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 확대·재생산되는 불안 및 공포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 하에, 필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여성개인의 권리함양 및 인권신장이 공공선과 공공성의 강화, 분배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화의 문제와 병행될 때만 젠더폭력의 축소와 극복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젠더폭력, 젠더평등, 강압적 통제, 신자유주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B00022).

** 이나영(주저자): 이나영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섹슈얼리티와 민족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nylee@cau.ac.kr

*** 허민숙(공동저자): 허민숙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운동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E-mail: minsheo@ewha.ac.kr

I. 여성에 대한 폭력: 담론과 현실의 경계에서

MB정권 이후 한국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2010년 김길태 사건, 2011년 영화 도가니의 광주인 화학교 사건의 공론화, 2012년 4월 수원 오원준 사건, 7월 통영 초등학교 살인사건, 8월 나주 초등학교 납치 성폭행 사건 등과 함께 법 개정 또한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시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3년 3월 19일 시행),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년 6월 19일 시행) 등의 개정이 잇따랐다.¹⁾

아이러니는, 성폭력 사건의 ‘유난스러운’ ‘증가’에 대한 공방 속에 성폭력 사범의 증가를 성매매방지법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다시 확산되고 있는 ‘풍선효과’ 논란과 관련 법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성매매의 합법화를 통해 성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지구화 과정’ 속에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 제정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법안 통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목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구호 속에, 폭력을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화된 권력관계에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여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비가시화되는 역설 또한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개인의 불운, 혹은 개인 남성의 병리적 혹은 일탈적 행위가 아닌 사회 전반의 의식과 실천을 통해 공고화된 성차별을 그 원인으로 한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사회에서는 합의된 원칙이기보다는 여전히 성취해야 할 과제일 뿐이라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1990년대 이미 전지구적 맥락에서 제기된 이 원칙은 여성인권담론과 더불어 우리에게 표상으로 존재할 뿐 현실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198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 담론의 장에서 의제화하고자 했던 한국여성운동의 노력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성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적이고 긴밀한 맥락 하에서 재생산되고 강화된다는 사회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여성폭력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협소하게 정의하

1) 그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친고죄 폐지,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 개정이라 평가받기도 한다.

거나 일반 폭력의 하위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각의 폭력들(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로 개별화되고 있고,²⁾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와 구제를 명시하는 법과 정책이 개별적으로 산출되고 있을 뿐이다(신상숙, 2008: 37). 이런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무엇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고민을 반영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확대되는 여성폭력의 원인과 효과를 재고하고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에 필자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괄적인 젠더폭력(gendered violence)의 문제로 보고, 이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와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이 의제화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폭력이 발생하는 배경과 양상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신자유주의 지형 속에서 살펴 보면서 여성폭력의 비가시적 효과로써 강압적 통제양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의 재개념화와 대안적 정책 방향 모색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II. 여성운동의 발전, 여성폭력의 의제화: 과정과 맥락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포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지만, 인권의 문제이거나 범죄로 인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성이 경험하는 특수한 고통이자,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로 인식되어 온 차별과 편견의 역사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 전지구적 여성운동의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지구화라는 배경 하에 전개된 지구/지역 간 여성들의 상호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75년을 원년으로 성장한 국제여성운동은 여성 간 교류와 협력, 소통을 넘어 변화를 향한 연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마주하게

2) 지난 몇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에 관한 논문과 정책적 제언들이 여성학, 사회학, 가족학, 사회복지 분야에서 꾸준히 산출되어 왔다. 이에 대한 리뷰와 소개는 이 논문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되는 보편 여성경험에 주목하게 되었고 바로 여기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급과 인종, 나이와 국경을 넘어 어디서나 발생하고 누구든지 경험할지 모를 여성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 반제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여성운동단체들과 남성중심적 조직 간의 쟁투의 경험에 기인한 ‘여성’ 의식의 발전이 그 배경에 있었다. 최초의 여성폭력 현장조직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1983년 설립되어 아내구타 관련 개별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했고(신상숙, 2007),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987년 설립되었다(한국여성단체 연합 연혁).³⁾ 이들 여성단체들은 기존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67년 창립)와 함께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성폭력은 강간, 아내구타, 매춘, 인신매매 등을 포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로 재구성되었다(신상숙, 2008; 변혜정, 2004a; 2004b).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여성폭력의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와의 연관성 속에서 독자적 의미를 구성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인 ‘부천 성고문 사건’(1986년 6월)마저 반민족, 빈민주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화되었고, 가부장제의 구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지는 못했다(조주현, 1996: 146-151).⁴⁾ 이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연관된 것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진보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매매 문제를 반제 민족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으며 스스로 여성주의자라 정체화하지도 않았다. 1980년대 중반 기생관광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총무 운영에는 1987-8년 당시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여성들조차 기생관광, 미군기지촌, 성매매,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에 의한 여성의 성침탈이라고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므로 1980년대 반여성폭력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 문제로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가부장적 권력이나 성별체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차이로서의 젠더를 강조하고 결핍과 결여로 특정화되는 여성의 신체만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신상숙, 2008).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들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사회문제화 되자,⁵⁾ 성폭력과 가정

3)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소개 글과 연혁 참조.

<http://www.women21.or.kr/tc/hello/category/17>

4) 관련하여 권인숙은 여연에 의한 올해의 여성상(1987년 제 1회) 수상 소감에서 성고문의 경험을 “여성노동자에게 가한 공권력의 노동탄압”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 문제를 성폭행 당한 “여성의 문제”로 보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조주현, 1996: 148-149).

5) 1990년대 초에는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아저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문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피해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여성운동을 추동하기 시작했다(조주현, 1996). 아이러니는 부친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사건을 “노동자 탄압”이라 정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로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집단적 ‘여성주의 의식화’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제국주의에 의한 ‘우리 여성의 성적 침탈’에 관심을 가지고 기지촌, 위안부 이슈, 성관련 이슈에 관여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적 여성문제로 성적 폭력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반성매매, 반성폭력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추동되었다(Lee, 2011). 그리하여 적어도 한국사회의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차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발생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 억압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문제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한국여성정의전화, 1999: 38).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은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성적 폭력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을 둔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을 뜻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부장적 성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성별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문제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운동 진영에서의 이러한 인식과 개념정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 권력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인지하는 대중의 의식을 추동하거나,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법적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차별금지법」이 연이어 제정되는 등 당시 한국여성운동은 일련의 젠더폭력을 법제화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기인한 사회문제라는 것,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이 각기 개별 사건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와 통제라는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의미를 제도화 속에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성폭력, 아내강간, 가정폭력 모두를 포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용어는 1992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성폭력(sexual assault)이라는 보다 협소한 의미로 수정된다. 이는 아내강간이나 가정폭력이 성폭력과 연속선을 갖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젠더폭력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성폭력 법조차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한 한국여성운동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Heo, 2010: 228).

제가 부각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의 이름으로 최초의 입법운동을 조직하고 성적 폭력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들을 포괄하여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폭력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시도를 벌였다(변혜정, 2004a).

기실 역사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나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은 사소한 일이라는 사회 통념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그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인류의 오래된 경험이자 현상인 여성에 대한 폭력에 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석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제화 과정은 ‘전형적인 희생자 구축’의 전략을 따랐다. 특수한 사회적 관심과 엄중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잔인하고 참혹한 피해의 나열은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했던 것이다.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성운동의 오래되고 반향적인 시위방식이 참혹한 피해자 사진을 전시하는 것, 성폭력 피해자의 80% 이상이 성인 여성이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가 강조되고 있는 것, 납치되고 감금된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성매매 여성의 처연은 같은 맥락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도를 넘는 수준의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폭력피해에 대한 묘사는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는 국가 및 사회적 대책 수립 요구에 필수적인 대중적 지지 확보의 가장 유용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필요와 전략은 그러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바로 ‘순수하고 순종적이며 여성스러운 피해여성의 이미지 구축’을 동반했던 것이다. 아이와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의 처참한 피해는 전폭적이고 극적인 대중의 지지와 관심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보호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지닌 여성의 위계를 설정하였다(Morrison, 2006: 1078; 허민숙, 2011: 125-126).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와 전략은 꾸준히 여성운동의 반성과 성찰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잔인한 폭력의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칭송이 결국 누가 진정한 여성 피해자인지에 관한 논쟁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을 여성운동의 패착이라 명명할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문제화하기 위해 결국 취약하거나 나약한 여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지형을 이용해야 하는 그 사회적 맥락을 더 깊이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때로는 구차하고 부차적인 다른 이유들로 대체되어야 하는 현실은 결국 여성이 누구인지, 무엇이 여성에 대한 범죄인지, 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인정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부유하는 인권담론

과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 현실 간의 멀고도 깊은 격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정의되어왔는지에 대한 재검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문제로 인지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와 걸림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서만 좁혀질 수 있다.

Ⅲ. 한국사회의 여성 폭력, 배경과 효과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과 법·정책적 개혁이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평가와 우려는 제도화의 방향과 고민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때문에 실제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폭력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제도화를 통한 법과 정책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로 여길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정조에 관한, 가정보호에 관한, 요보호 여성에 관한 문제로 구축되었던 한국사회 여성폭력 제도화의 역사와 과정 속에서 여성이 폭력에 취약한 진정한 이유, 그 폭력의 본질에 대한 논의,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명명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치 못했고, 당연히 젠더불평등과 권력의 문제가 충실히 조명되지도 못하였다. 통합적 관점에서 여성폭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의 주된 공통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그 발생 배경과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요소들이 전형적 남성성의 구축 양식에 불안을 야기하는 방식, 이를 통해 공포가 재생산되고 표출되는 방식이 젠더폭력과 연관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젠더폭력의 현실과 양상

젠더폭력과 관계된 법제정 이후 많은 사람들은 점증하는 발생건수를 지적하고 법적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공히 사건 발생율과 신고율 간의 간극이 크고, 암수가 많은 특징을 가지며, 신고건수를 발생건수로 잡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이 글에서 사건의 증감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그간 사건의 발생 추이를 살피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전반적인 여성폭력의 현실을 가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성폭력의 경우,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율이 인구 1,000명당 29.1명(여성가족부, 2007)인 반면, 200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2.5명으로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10).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피해자 32.5명’이란 숫자는 대검찰청의 ‘강간죄’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다. 유사하게 UN자료에서도 한국은 10만명 당 신고건수가 2006년 28.9명에서 2011년 40.3명으로 증가했다고 나타난다.⁶⁾ 그러나 설문조사에 기반한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성폭력 발생률(중복 포함)을 인구 10만 명당 2887.3명으로 보고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0). OECD 자료에는 2009년 기준 한국의 성폭력(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과 성폭행) 발생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33.7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식적 신고건수에 기반한 것이므로 실제 발생건수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통상 성폭력 신고비율은 발생 건수의 8%, 많게 잡으면 15%로 여겨지는데, 200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공식 통계의 8배 정도가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 건수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1회 이상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그 빈도는 5명당 1명꼴이며, 여성 10명 가운데 셋은 평생 동안 신체접촉은 물론 성희롱, 음란전화 등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0). 명백한 것은 사건 발생율의 진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5%, 여성 94%로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대검찰청, 2010), 신체적 성폭력의 피해자는 여성 전체 인구의 4.7%, 남성인구의 0.9%에 해당한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10).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7%, 남성은 2%이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은 0.6%라고 한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1~30세 피해자 발생건수가 7,386건으로 가장 많고, 16~20세 4,979건, 31~40세 2,421건, 41~50세 1,916건 순(16세-30세까지 약 60% 이상 차지하나 전 연령대 대상)인데, 2002년 대비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친밀한 관계나 면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9년 성폭력 상담 결과 1,338건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85%로 나타났으며(한국성폭

6) 자료는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Sexual Violence, Total Sexual violence means rape and sexual assault; including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참고.

력상담소, 2009), 2013년 상담결과에는 아는 사람이 74.6%(한국여성민우회, 2013).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남녀 공히)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강간미수나 강간 등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일수록 아는 사이에서 발생률이 거의 80%에 이르고 있다.⁷⁾ 문제는 기소율이 낮다는 점과(<표 1> 참고) 재범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성폭력 가해자 중 초범이 37.7%인데 반해, 동종전과에 의한 재범 16.2%, 이종전과에 의한 재범 52.1%에 육박하고 있다. 동종전과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1.6%, 2년 이내 14.7%에 이른다고 한다(법무연수원, 2009).

<표 1> 최근 5년간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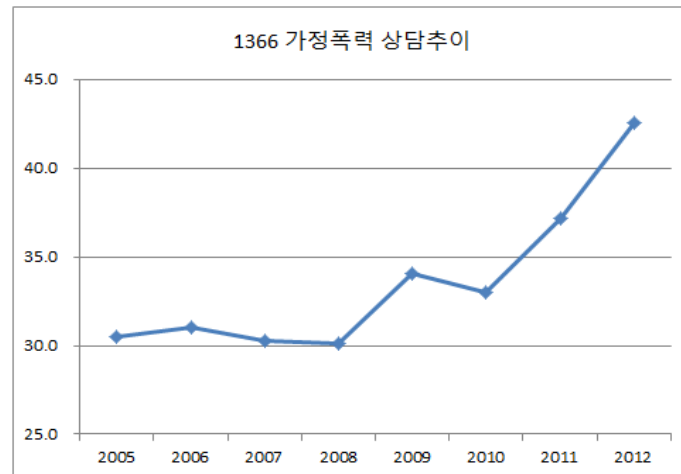
연도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명)	조 치	
					구속	불구속
2008년		15,970	14,415	15,235	3,011	12,224
2009년		17,242	15,954	16,479	2,681	13,798
2010년		20,375	18,065	19,712	2,973	16,739
2011년		21,912	18,499	20,189	2,614	17,575
2012년		22,935	19,381	21,271	2,490	18,781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2013)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발생 건수는 2004년부터 감소추세이나, 아직도 발생률은 50.4%(2009), 54.8%(2010)로 높은 수준이다(이미정 외, 2013). 우리나라 기혼자의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54.3%로 나타났는데, 1년 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은 45.5%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속율은 1999년 6.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0.8%를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에 따라 상담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 1366 긴급 전화 상담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42.6%)을 비롯한 가족 내 갈등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53.1%(2012년 기준)을

7) 강제추행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 업무상 아는 사람 40.2%, 동네 사람이나 그냥 아는 사람 21.5%, 전혀 모르는 사람 30.7% 순이며, 강간미수의 경우, 선후배, 업무상 아는 사람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동네 사람이나 그냥 아는 사람 15%, 전혀 모르는 사람 23.8% 순서이다. 강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 업무상 아는 사람 30.7%, 동네 사람이나 그냥 아는 사람 22.5%, 전혀 모르는 사람 18.8% 순이다.

차지한다.⁸⁾ 긴급전화 136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가장 많고, 2011년 전체 상담 건수의 37%, 2012년 43%를 차지한다([그림1] 참조,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현황).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서울통계

[그림 1] 136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연도별 추이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하게 2013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유형 중 정서적 폭력이 7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신체적 폭력(62.0%), 경제적 폭력(26.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2%로 다른 관계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한다(한국여성의 전화, 2014). 가정폭력은 은폐(사적인 일로 여겨 사회적 묵인), 반복(지속성, 반복성), 중복(관계 간), 순환(세대 간)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지니며, 다른 폭력과 상호교차적, 순차적,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타 사회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성매매의 경우, 발생율을 가장 가늠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실제 현장의 규모와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율 또한 단속 건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정권의 의지와 법집행의 실효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성

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단체들의 자료와 보고서,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여전히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성매매알선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매매 실태

구분(추정치)	2002년	2007년	2010년	2013년
성매매 여성 수	33만	27만	14만2,000	13만~
성구매자	16,884만명	9,395만명	1일 평균 집결지 4.9명 -	1일평균 집결지 5.3명 -
집결지 지역	69곳	39곳	45곳	44곳
집결지 여성수	9,092명	3,644명	4,917명	5,103명 (2010년 대비 3.8%증가)
집결지 업소수	2,938개	1,443개	1,806	1,858
산업형 (점업형태)	57,938개	44,804개	전국 16개 시도 2,000개 표본 35,926개	전국 16개 시도 1,053개 표본 18,100개
성산업 규모	7개 업종의 업소에서 약 16조 5천억 원,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연간 매출액 1조 8천억 원, 기타 비업소형까지 포함, 총 24조원 규모로 추정 (GDP의 4.4%에 해당)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4만 6천여 곳, 거래액은 약 14조 950원	전체 성매매산업의 규모는 총 6.86조원이고, 이는 국내총생산 의 약 0.65%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전체 성산업 규모추정은 하지 않음

출처: 전국연대, 2014;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참고: 2002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년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실태조사(서울대여성연구소), 2013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서 재구성.
실태조사자료는 국가 미승인통계자료에 기반함)

성매매단속과 검거인원을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 검거된 인원의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구속율 또한 하락하고 있다

(<표 3> 참조). 전체적인 특별법위반의 경우 50%가 훨씬 넘는 기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대검찰청, 2012년), 성매매알선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매매여성들은 피해자 규정에 의해 형사면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행위자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전국연대, 2014;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표 3> 성매매관련 단속현황(2009-2013)

년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명)	비율	불구속(명)	비율
2009	25,480	71,953	388	0.54%	71,565	99.46%
2010	9,583	28,244	216	0.76%	28,028	99.24%
2011	7,241	26,138	243	0.93%	25,895	99.07%
2012	7,598	21,107	244	1.16%	20,863	98.84%
2013	7,533	21,787	207	0.95%	21,580	99.05%
총계	57,435	169,229	1,298	0.77%	167,931	99.23%

출처: 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2. 여성폭력의 배경과 원인: 젠더질서 재생산의 기제

그간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젠더불평등한 정치-경제적 질서와 지배와 폭력의 남성성에 대한 신화가 강한 문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Heise, 1999: 292).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려 노력해 왔다(Burn, 2011). 학대적 상황, 불평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별 여성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과감하게 떨쳐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권한과 사회, 문화적 지위와 연관된다. 실제 한 사회속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는 남성중심의 가족과 공동체, 국가기구(판사, 검사, 경찰 등)의 여성폭력에 대한 침묵, 용인, 관대함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남성중심의 성문화는 구조적인 젠더불평등과 폭력을 매개하면서 유지, 재생산된다. 성적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이 일반 남성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실제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의 사적 소유물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공고화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여성폭력은 남성(성) 욕망과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성)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명시적인 성차별,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교육과 건강권 제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재현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 집단으로서 여성은 남성보다 빈곤하며,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상업적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훨씬 대상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다. 그러한 보다 거시적 차원의 요소들에 의해 여성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Kirk and Okazawa-Rey, 2010: 258-259).

단순한 법적, 제도적 정비, 이를 통한 여성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여성폭력의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나 상호연관되어 여성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여성주의 관점을 계승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 요소에 주목하여 재구성되는 여성폭력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여성이 마주한 새로운 위험이란 ‘폭력사용의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일컫는다.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라 여겼던 ‘성별에 기반한 특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폄하, 무시, 경멸이라는 전형적 방식을 답습하지만, 남성들 간의 차이를 심화시킴으로써 젠더평등을 저지하고 다층적 차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변별화된(Stark, 2007). 신자유주의 시대 남성성의 위기를 젠더폭력과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해 주목하려는 것이다.

1)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위험과 공포의 재생산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난히 증가하는 듯 보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절망범죄의 일환으로 지적해 왔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2). 승자독식의 사회, 사회적 배제와 빈곤이 점점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구조적 벽에 가로막혀 절망하고 좌절하며 분노한다. 그리고 생존의 욕구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은 또 다른 약자들(여성과 아동)을 향해 내면적으로 축적된 분노를 배출할 확률이 높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필자들은 그러한 폭력 양상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와 ‘글로벌 경제의 하녀로 전락’한 국가의 실패에 배태되어 있다고 여긴다. 지그문트 바우만(2006)이 지적했듯, 전지구적 자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1세기에 국가는 시장의 힘을 규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이며 ‘부정적인(negative)’ 세계화에 항복하고 말

왔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후원하고 보장했던 지지대가 뜯겨나간 영역은 이제 시장의 일탈 행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대가로 증폭된 사회불안과 붕괴의 결과는 고스란히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개인-희생자들이 떠안게 된다(220-221). 더욱이 개인의 의무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자기 관심, 자기 이익추구, 자기에로 대체된 개인화된 사회에서 인간에게 다른 인간은 “실존적 불안의 원천(경쟁상대)”이요, 사회는 “덧과 매복으로 가득찬 적지”일 수밖에 없다(217). 이처럼 일상이 투쟁인 사회에서 인간적 유대는 더욱 약화되고 나약한 존재로서 생존해야 하는 인간의 공포심은 점점 강화되며, 점증하는 공포감은 다시 인간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지지체가 붕괴된 자리에 정체모를 불안감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순환되어 재생산되는 공포,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마련이다. 일상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는 국가에서 약자들은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다. 남성역차별에 대한 주장, 페미니즘에 대한 역풍 현상, 여성혐오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화의 확산(예로 일간베스트), 잔인한 성폭력 범죄와 절망범죄 등은 사실상 리스크가 사사화된 신자유주의 국가의 부산물인지 모른다.

이로써 권력은 공포를 빌미로 재생산된다. 시장의 횡포에 대한 방어책 수립,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대책 등, 시스템과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CCTV를 달고, 방법순찰을 강화하며 전자발찌를 채우는 수선스러움으로 대체되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치환되었다. 촛불시위는 유언비어 탓이며, 유병언은 세월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북한은 늘 최후의 알리바이로 제시된다. ‘국가개조’의 대상에서 정작 정부와 권력자들은 비껴난다. 이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이라 규정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인 성불평등, 사회적 배제,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경쟁위주의 입시체제의 문제는 외면한다.

문제는 빈곤한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가 필연적으로 가해자-범죄자가 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불운이 극대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상태가 되면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가치나 질서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조건이나 사람, 집단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불안의 원인을 투사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특히 실제 사건의 가해자로 판명된 이들은 도덕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불안의 원흉으로 지목되는데, 특정 자질의 정형화(stereotyping)를 통해 극화된 문제에 대한 상징적인, 가상적인 해결책이 모색된다(Weeks, 1994: 142).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낱알이 공개되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 “공포의 자극으로 가동되어 또 다른 공포를 끊임없이 양

산해내는 메커니즘”(Bauman, 2006: 218)에 충실한 미디어의 역할에 고무되어, 극악한 악행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점점 “어설픈 조짐을 실제로 만들고, 허깨비에 살과 피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렴된다.⁹⁾ 탈윤리화된 사회·경제적 차원이 도덕적인 차원과 극적으로 조우하게 되면서 전치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다카시(2011)가 지적했듯, 이러한 전이는 “자신과 섞일 수 없는 특정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론적이고 도덕적인 우주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키는 조작” 과정을 동반한다(264). 우리가 안전패닉과 ‘멘붕’에 빠진 원인은 ‘모두 사악한 특정 인간의 행위 때문이거나 특수한 종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연약한 아이의 심신을 망가뜨린 ‘악마,’ ‘아동 포르노물’에 중독된 ‘변태’이며, 욕망의 감옥(몸)에 갇힌 ‘환자’다. 그러므로 문제는 ‘인류의 본성에 내재한 악/죄’이거나 고환, 뇌, 호르몬이다. 치유책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움을 받거나,” “방사선, 호르몬, 물리적 거세” 등 의학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보호수용제, 강력범 전문수용시설 등을 통한 장·단기간 격리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사형을 통한 완전한 제거(영구 격리)’ 밖에 없다.

그러므로 리스크가 개인화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더클래스는 이전까지의 계급 개념과 같은 사회적 계층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계급은 이제 “도덕적 경계구분”을 함의하며 사회계급간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만이 전면에서 부각된다(다카시, 2011: 267). 이에 따라 범죄정책은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보다는 특정인을 특정 지대에 가둬 넣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258-259). 범죄 및 폭력에 대한 공포와 그에 따른 혼란을 디딤돌 삼아 자발적 격리와 게토화가 발생하며, 혼란스러운 생활과 ‘상실’된 공동체 감각을 회복시키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다.

리스크가 사사화되는 사회에서 확산되는 도구적 가족이기주의는 가족 밖의 낮은 이들에 대한 타자화와 배제 또한 수반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전위(轉位)의 현장에서 잔존하는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정상성, 규범, 전통적 가치관 등

9) 성폭력의 원인, 과정, 대처방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죽음을 파는 장사치로 전락하여 성폭력을 극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 맥락은 거세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담론적 폭력의 재물이 된다. 미디어의 보도 양상을 단순히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인: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 ‘사이코 패스’, ‘짐승’의 일탈적, 개별적 범죄, 아동 포르노물을 즐기는 ‘변태’→ 원인의 개인화(사사화); 2) 과정: 사건의 수사과정 상세 공개, 가해자 공개, 상세한 범죄 스토리 재구성, 피해의 극화, 피해자 신상 유출, 시민의 분노를 극화함→ 인권침해 발생; 3) 대처방안: 현행법의 타당성에 의문, 사회제도 미비, 피해자 지원(의료체계), 처벌과 감단적 사후 약방문만 주문(자료 참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모니터링).

으로 해석되지 않는 낯선 이들의 등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들에게 타자는 때로는 자신이 처한 부당함과 부정의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게 하는 대리물이거나, 사회적 불안과 예측불가능성을 높이는 위협한 이방인이며, 개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침입자이다. 타자들은 실질적인 위협과 폭력을 증폭시키는 ‘괴물’로 재구성된다. 이제 경쟁과 일상적 전투가 난무하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딸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조심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한국여성민우회, 2011),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생물학적) 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혐오문화의 확산은 도구화되는 가족이기주의 및 경쟁적이며 이기적인 자본의 축적 현상과 분리되기 어렵다.

이제 경제적, 정치적 공포감의 실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가되고 ‘잔인한 폭력에 희생된 처절하고 가엾은 피해자 이미지(아동)’는 힘없는 시민에 대한 국가감시체계의 권력을 증가(예: 치안강화를 명분으로 한 불심검문의 부활)시키는 알리바이가 된다. 이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라 정의했던 여성주의 분석과 주장은 비가시화되고, 기존의 계급질서, 젠더질서, 이성애중심주의,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는 흔들림 없는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2)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기제로서의 폭력(masculine violence)

리사 로펠(Rofel, 1999)은 젠더는 근대성이 상상되고 욕망되는 중요한 양상들 중 하나로 복무하기 때문에 젠더 차이는 근대적 권력의 핵심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젠더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뿐만 아니라 권력을 자연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근대성을 구축해 왔다는 것이다(19-20). 그러므로 젠더는 단순히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 자본(계급), 인종 등에 관한 것이다. 로펠의 주장은 분리된 영역이나 담론으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다양한 권력 관계들 속에 배태되어 있는 젠더, 권력의 다른 테크놀로지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젠더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환기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주류’ 비판 담론이 다시금 비가시화하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재고점이자 여성 폭력에 대한 사유의 출발점이다.

서구식 근대적 사회질서에 포섭된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적 위계질서 속에 성별에 따른 공/사 이분법과 역할 분리(수직/수평)가 공고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몇몇 지표의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기존 질서는 도전받고 있는 듯 보인다.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는 기존의 젠더질서가 윤희한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 반동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무의식(불안)과 결합된 개인-남성의

자존감 확인 기제로 발현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많은 남성들은 남성성의 불안함을 실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성성은 약자에 대한 물리적 지배와 정복, 공적 공간에서의 능력(돈과 권력)으로 가늠되고 피지배, 종속, 취약함, 무능력, 의존성 등은 여성성으로 인지된다. 물리적이든 성적이든, 계급적이든 ‘능력’ 있는 자가 언제든 접근가능하며 손쉬운 정복과 착취, 공격의 대상으로서의 (무의식적/실질적) 위치는 ‘여성-젠더’에게 할당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 인간 주체의 속성은 남성-젠더의 속성에 맞춰져 있으며 젠더 속성에는 위계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아와 젠더의 병렬적 연결,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기대되는 젠더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남성일수록 여성화(feminization)에 대한 불안과 ‘나약한 여성’의 위치에 고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증폭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강한 남성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젠더는 늘 수행을 통해 보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수행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때론 과잉으로 때론 결핍으로, 남성들의 젠더 수행은 시계추처럼 도달할 수 없는 ‘정상적인’ 젠더 각본을 향해 유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에서 배제되고 권력관계에서 소외된 남성일수록 과도한 남성성의 물리적 발현을 통해 남자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커진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일관된 관계를 통해 입증되는 인간, 남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물리적인 ‘힘-몸’뿐인 남성일수록 증오의 대상(여성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남성성을 수행함으로써 찢겨진 자아에 대한 봉합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폭력을 초도로우는 ‘사내다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폭력, 또는 남성성의 폭력’(masculine violence)(Chodorow, 2011)이라 부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폭력은 결국 무기력한 자아(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절망감이나 증오, 분노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반복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왜냐하면 자아가 좋은 자아와 나쁜 대상으로 분리되면서, 나쁜 대상은 여성성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성의 부인을 통한 자아의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타자에 대한 공격이자 자아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남성은 반복적으로 ‘사내다움’을 확인받고자 하지만 결코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단순히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자아구성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투쟁의 장이다(Chodorow, 2011).

따라서 여성폭력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섹슈얼리티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예쁘거나 어리거나, 둘 중 하나가 ‘가치있는 여자’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며,

‘이쁜 것’과 ‘어린 것’은 취약함과 연결되고 ‘아름다움’과 ‘성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한국 사회에서 젠더는 결코 섹슈얼리티와 분리될 수 없다. 공/사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하며, 남성의 성적 충동을 본능이라는 이름하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여성에 대한 이분화(보호해야 할 여성-어머니, 아내, 딸/보호 밖의 여성-창녀, 놀 때 만나는 여자, 걸레)가 관습이 된 사회에서 어떻게 젠더 수행이 섹슈얼리티와 분리될 수 있을까?¹⁰⁾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취약’한 자에게 배출하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불편함 없이 순간의 욕망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에게 배출하며, 권력이 없는 자는 생물학적 본능이라는 이름하에 물리적 힘을 행사하여 여성을 정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분리된 채 남성들의 관행/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성적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성애 중심의 섹슈얼리티는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의 표현이 되며, 여성은 남성들 간의 관계를 보증하는 교환대상이자 남성성 확증을 위한 기표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적영역(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폭력에 너그러울 확률이 높다. 헤이즈(Heise, 1999)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적영역에서 개인 간의 폭력이 쉽게 용인되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위협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292). 사적영역에서의 폭력에 너그러운 사회에는 공적영역에서 또한 여성이 폭력의 위협에 놓일 확률이 높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소화되고 사사화되는 사회일수록 여성-젠더는 남성지배적인 성적 판타지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헤이즈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되는 불평등한 젠더 질서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가족 안의 남성 지배와 사회 속의 젠더불평등이 긴밀히 결합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율을 높인다고 주장한다(같은 글).

그러므로 불평등한 젠더질서는 사회를 구조화하는 다른 권력의 테크놀로지들과 결합되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야기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인종적 소수자를 향한 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종적 소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주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섹슈얼리티는 인종에 기반한 권력관계의 표현이 된다. 혹

10) 예를 들어, 성을 파는 자 대부분이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을 파는 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젠더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즉 취약한 자,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자는 여성-젠더로 환원되고 기존의 젠더각본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젠더는 성애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각본 하에서 여성에게 성매매는 다시 제한된 선택지로 놓인다.

인(유색 인종)남성에 대한 백인 남성들의 집단 린치나 흑인(유색 인종)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강간 등은 인종화된 섹슈얼리티(racialized sexuality)의 구현과 성애화된 인종질서(sexualized race) 구축을 통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새롭지 않은 우리들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기존의 이데올로기-계급질서,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 등- 및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분리되기 어렵다.

3) 이중의 피해자 여성 - 피해자 비난과 젠더 수행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안보(security)와 안전(safety)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또한 남성중심의 사회질서가 여전히 공고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곤한 여성은 취약한 자와 접근 가능한 자로 자리매김 되며 폭력에 훨씬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놓인 가족 구조 안에 있는 여성, 주변화 되어 있기에 평상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이들은 일상 속 폭력에 노출되기도 쉽지만,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젠더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성이 실제로 심각한 상흔을 입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신체적 상흔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는 폭력 피해자의 삶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젠더폭력을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시켜 인식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폭력이 여성의 삶에 초래하는 결과가 한 사회 내에서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다.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협소한 사회일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만을 피해사실로 간주하고, 손쉽게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 자격에 대한 심문을 통해 지속적인 젠더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젠더폭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여성혐오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의 희생을 초래한다.

윌리엄슨(Williamson, 2010)은 여성의 경험을 듣고 이해해 줄 청중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과 맥락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본질과 실상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1419).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편견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는 젠더폭력의 본질이 규명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성이 성별규범에 의해 구축되고 이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여성성과 여성역할이 재강화된다. 성별규범에 의한 피해자 전형성의 구축이란 과격하고 잔인한 형태의 물리적 폭력,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상해와 상처,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육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여성만을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이에 연민을 느끼는 사회적 태도의 형성

을 말한다. 폭력에 대한 이러한 설정과 상상은 필연적으로 순수하고 결백한 피해자의 구축으로 종결된다. 폭력유발에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우연적이고도 불운한 피해자만을 진정한 피해자로 여기는 인식과 태도가 확산되는 것이다(허민숙, 2012: 85-86). 전형적 피해자의 구축은 폭력을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폭력을 덜 위중하게 다루는 사회인식과 실천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폭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는 여성들을 젠더폭력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함께 확산시킨다는 데에 있다.

육체적 폭력 피해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집중, 그에 따라 피해자의 전형성이 강조됨으로써, 사건 후, 그리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당당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은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어쩌면 진짜 피해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동반한다. 이러한 인식 구조 하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젠더폭력의 피해여성들은 곧잘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죄 없는 억울한 남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도하거나 꾸민 것이 아니냐는 추궁의 대상이 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두고 남성을 분노케 하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거나, 혹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난하는 일,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채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는 나쁜 여성으로 피해여성을 몰아가는 일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여성들에게 우리사회가 남기고 있는 절망과 분노로 얼룩진 상흔을 잘 보여준다.

규범적 젠더 수행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사회에서 젠더폭력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의심받거나, 오히려 비난받는 등의 이차 피해를 넘어 자신이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가해자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폭력을 경험한다. 폭력을 피해 도망친 피해여성을 추적하는데 있어 가해자들은 ‘피해자 비난’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해여성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스럽지 못한 행실,’ 그렇기에 ‘폭력을 당해도 마땅한 여성’이라는 주장은 공무원이나 경찰, 검찰, 나아가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가장 치명적인 가해자에게 맡겨버리는 일로 이어진다. 밧줄로 묶이고 목이 졸리는 등의 무섭고도 잔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에서 부부상담 명령을 받은 피해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¹¹⁾, 25년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남편에 의해 목 졸렸던 바로 그 노끈으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여성에게 ‘이혼

11) 한겨레. ““죽인다”는 남편과 ‘협약’하라니...아내는 이혼소송 중 살해됐다.” 2013년 5월 23일.

했어야 했다’며 살인죄로 기소하고 실형을 선고¹²⁾한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점에서 젠더폭력의 방관자이며 암묵적인 동조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여성의 이러한 현실은 과연 여성이 시민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인지되고 있는지, 그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국가의 책임과 책무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 마련된 국가개입과 국가정책, 법적근거 등이 과연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유형의 개별적 사건으로 보이지만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젠더폭력의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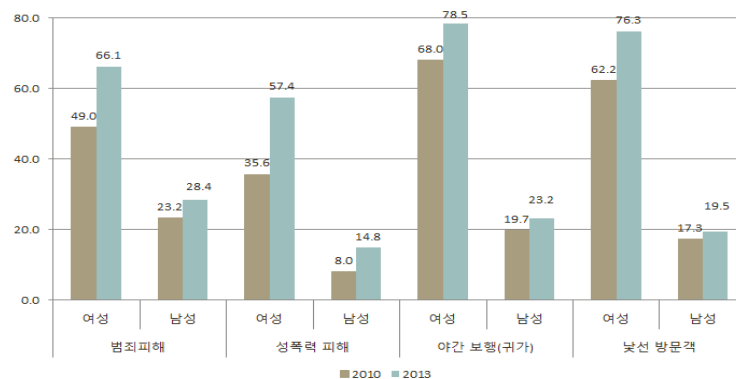
4) 공포의 확산과 강압적 통제

젠더폭력의 본질과 효과가 탐구되지 않고, 또 그것이 탐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실제 무기(흉기)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그 무기를 휘둘러 실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지를 폭력발생과 피해발생 여부의 준거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칼로 위협하고” “망치로 때린 것만” 진술하라는 경찰의 요구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을 인지하는 사법시스템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허민숙, 2012: 84).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상세하고 자극적인 보도(한국여성민우회, 2011), 강제/자발에 근거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재단과 낙인 또한 물리적으로 가시화되는 피해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젠더폭력이 단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폭력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공포에 대한 탐구와 관찰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함으로써, 실제 젠더폭력이 여성들의 삶에 드리우고 있는 공포와 긴장, 그로 인한 여성통제와 규율효과가 제대로 간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혼자 사는 여성, 가난한 여성일수록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폭력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서울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시 거주 25~49세 여성 1인 가구 550명을 조사한 결과(2012), 혼자 생활하면서 어렵고 곤란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76.5%)’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한다(복수응답).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약 80%가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불안에 떨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 건축사회 여성위원회

12) 한겨레 21. “‘25년 폭력’ 앞 살기 위한 저항이었지만...” 제1032호.

가 20세에서 50세 사이 여성 1인 가구 3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12), 응답자의 12.6%가 범죄나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많은 연구들이 방증하듯, 낯선 타자에 의한 폭력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Hickman and Muehlenhard, 2004: 394)¹³⁾ 폭력에 대한 공포는 잠재적이고 상시적이라는 점이다. 성폭력, 야간보행 등에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가 남성보다 높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그림 2] 참조).¹⁴⁾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 가능성, 이로 인한 공포감은 실제 여성들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권인숙·이건정(2013)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가 가부장제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자, 여성의 무력감과 보호받는 자로서의 위치규정을 고정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다시금 가부장제 유지의 핵심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증명한 바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3b

[그림 2] 국민 불안 체감율 연도별 추이와 성별 차이

13) 앞서 지적했듯 한국의 경우, 성폭력피해의 74.6%~85%가 아는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 트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한국여성민우회,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특히 강제추행, 강간 미수나 강간 등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일수록 아는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10). 서구에도 강간의 경우, 아는 관계에서 발생할 확률이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한다고 한다(Hickman and Muehlenhard, 2004: 394).

14) 2012년 기준 여성은 40.6%, 남성은 33.9%가 일상 속에 불안함을 느끼는데 남녀차이는 2008년, 4.6%에서 2012년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성폭력실태조사 자료).

인간이 느끼는 공포는 무력감과 공격받기 쉽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다카시, 2011: 253). 취약성과 무기력으로 연상되는 공포는 따라서 여성성과 쉽게 연결되며, 여성인 것 자체가 공포로부터 분리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파악되기 쉽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며 공격적이지 않다는 문화적 기대에 따라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여성 다움으로, 그리고 여성성이 내포된 아름다움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취약한 여성을 정상화하는 이러한 담론, 여성의 비공격성에 대한 신화 자체는 남성우위적인 성별권력과 성별위계질서를 강화하고 고착화한다. 여성에 대한 공포가 기정사실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면서도 남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며, 남성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남성이 승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와 경제 등 경쟁적이고 적극적인 영역에 여성은 어울리지 않고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문화적 편견을 확산하기에 결국 여성이 두려움과 공포에 취약한 성별로 고정되는 결과를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White and Kowalski, 1994: 492). 이러한 관점은 여성이 비공격적이라는 신화, 여성의 공격성이 합리성이 아닌 병리적 현상으로 쉽게 해석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과 연결된다. 이러한 비판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과 그 결과인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포가 여성이 경험하고 감내하는 공포의 본질인지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폭력피해를 자초했다는 사회적 비난, 폭력을 유발한 나쁜 여성이라는 오명, 여성성이 훼손되었다는 낙인, 폭력피해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어디서고 보호받거나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절망,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각인, 이미 인식된 특정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정치경제적 지위에 젠더 간 격차가 심하고 여성답지 못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며 가해자의 범죄배경에 관심을 보이며 두둔하는 사회 환경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여성의 공포와 두려움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폭력, 그러나 그 상흔의 크기와 깊이가 신체적 폭력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은 폭력의 비가시적 효과를 드러내면서 젠더 분석을 다시 전면화 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과 비판적 통찰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압적 폭력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자아 존중감, 자신감, 자기존경을 파괴하는 학대들”(Williamson, 2010: 1412)에 관한 것이다. 조롱과 욕설, 위협과 비난, 암묵적 강요와 경멸 섞인 침묵, 고립시키고 무시하기의 형태로 자행되는 이러한 학대는 사법적 프레임에서 비교적 가볍고 유사한 폭력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는 학대들이다. 강압적 통제

의 대표적 이론가인 스타크(Stark)은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이러한 폭력과 학대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왜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스타크는 여성의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가능한 그 이유를 성차별적 성별규범에서 찾고 있다. 여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의견, 보호의 대상인 여성에게 보호자로서 가질 수 있는 우려와 관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여성에 대한 비난과 통제는 바로 성차별적 성역할과 성규범을 배경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의 당사자인 피해여성조차 이것이 폭력의 한 형태임을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여성성을 드러내고 여성역할을 수행하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적인 학대와 스트레스, 불안과 죄책감이 종국적으로는 여성들의 결정권을 찬탈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훼손한다는 것의 부당함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Stark, 2007; Williamson, 2010).

젠더폭력으로 인한 명백한 물리적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구제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어쩌면 강압적 통제개념이 제시하는 보다 광범위한 폭력에 대한 논의는 너무도 앞선 이론일 수 있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 개념의 미덕은 바로 불평등한 젠더질서가 ‘여전히’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게 한다는 데 있다.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과 학대에까지 여성이 노출되어있다는 그런 단순한 결론이 아닌, 여성의 일상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점거당하지 말아야 할 권리와 이유, 여성의 결정과 행동이 젠더규범과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비난이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젠더폭력은 성차별적 관행과 불평등한 젠더질서에 기인하며 이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폭력의 본질, 폭력의 장기적이고도 파괴적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 없이 단지 물리적 행위, 그리고 의학적 판단과 소견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젠더폭력의 원인을 규명할 수도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으며,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실천과 노력 또한 지남할 것이다.

IV. 나가며: 젠더폭력으로서 여성폭력

신자유주의 국가체제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도전, 불확실성(공포와 불안)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들은 개별적 안전 보장의 문제 앞에 스펀지처럼 흡수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불안 요소를 청소하기 바빠졌다.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의 증대를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거나 각종 ‘규제철폐’와 개인의 자력부조 현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부추긴다. 무인 경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간혹 불운이 닥친 사람들 앞에서 ARS전화 한 통화나 적은 기부금으로 위안을 삼게 하며, 국민성금이라는 사적 부조가 공적부조를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여성과 빈곤한 자들, 사회적 소수자들의 구조적인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러한 사회 환경과 담론 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사회구조적인 발생원인과 맥락이 삭제된 채 피해자가 성인여성이라면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 의사결정권이 있는 성인 개인의 자율적 권리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구제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해결과 대책을 종용하는 사회에서 여성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안전의 위기는 여성이 처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는 이미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횡행하는 역차별로 인해 무고한 남성들의 삶이 피폐해져간다는 등의 현실을 호도하는 담론이 만연된 사회는 젠더폭력이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을 근거로 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의 미흡한 정치적 대표성과 경제적 취약성 역시 여성의 무능과 한계로 쉽게 결론 내려지며,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과 불안한 경제적 지위는 다시금 여성들이 젠더폭력에 노출될 위험과 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킨다. 국가가 아닌 개인남성의 보호에 의존해야 하는 치안과 안전문제, 개인능력이 아닌 성별로 인해 계급화 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남성에 대한 여성종속을 심화시키며 여성경험에 근거하고 여성입장을 담은 사회구조적 개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를 포괄적인 젠더폭력으로 보고 한국사회 젠더폭력의 발생 배경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이 젠더폭력인 이유는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폭력의 형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여아가 피해자가 되는 폭력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성별위계질서에서 배태한 폭력이자 남성(성)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폭력(men's power over women)

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젠더폭력은 남성성/여성성의 위계적인 (물리적, 상징적) 질서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폭력이 된다.

젠더폭력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상흔(자기비하, 우울증, 자살 기도 등)을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취약한 자)에 대한 차별, 착취, 폭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피해의 경험이 있거나 잠재적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로써 젠더폭력은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성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을 지지하고 재생산하여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논의한 개별적 여성폭력의 양상들을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도식화해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젠더폭력의 양상, 원인과 효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간성 Temporality	일회성 → 지속성 (폐쇄성 속의 지속성이 다(多))	일회성 → 지속성 (개방성 속의 일회성이 다(多))	일회성의 반복 (과정 속의 국면성(process와 duration 속에서 일어나는 일회성이 다(多))
공간성 Sphere	사적 공간	공적/사적 공간	공적 공간(공/사의 전치)
가해자	주로 어른, 남성	남성	주로 남성
피해자	주로 여성, 아동, 노인 등 상대적 약자	주로 여성, 아동 (소수의 남성)	주로 여성
관계성	1:1 (1:다수)	1:1 (1:다수)	3자 관계-거래관계 속의 여성 (3자 관계 안의 1:1 연속선)
친밀성의 정도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모르는 사이(연속선)	모르는 사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발생원인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물리적 힘 등에 의한 위계관계)	나이+물리적 힘+젠더+계급+ 인종+섹슈얼리티 등 → 불평등한 젠더질서와 남자다움의 실현	젠더+섹슈얼리티+나이+ 계급+인종+물리적 힘+기타 권력 → 불평등한 젠더질서와 남자다움의 실현	섹슈얼리티(성적 욕망)+젠더+나이+기타 권력(돈, 지위)+물리적 힘+계급+인종 → 불평등한 젠더질서와 남자다움의 실현
폭력의 내용과 정도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 위협과 학대, 폭력, 감금, 협박, 성적 폭력, 살인 등	물리적, 언어적, 시각적 → 성적 폭력, 살인, 위협, 학대, 감금, 살인 등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 감금, 위협과 학대, 폭력, 노동착취, 임금착취, 성적 폭력, 살인 등
(피해)효과	신체적 상해, 정신적 상흔+통제와 규율효과 → 공포의 확대와 순환 & 젠더질서의 재생산	신체적 상해, 정신적 상흔+통제와 규율효과 → 공포의 확대와 순환 & 젠더질서의 재생산	신체적 상해, 정신적 상흔, 경제적 손실(빚)+통제와 규율효과 → 공포의 확대와 순환 & 젠더질서의 재생산

젠더폭력의 원인과 발생, 그리고 그 결과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침묵시키는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특정 개인에 대한 상해가 아닌, 여성 전체에 대한 집단적 공격이자 상해가 된다(Goldfarb, 2000: 16). 이러한 지적은 젠더폭력이 결코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젠더폭력의 해결을 위해 전체 사회구조가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 젠더폭력은 성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사회질서 속에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여성억압과 혐오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여성성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피해자인지를 타진하는 사회는 누가 젠더폭력의 목표물이 될 것인지, 그럴 때 어떻게 외면당할 것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성 우월함에 대한 표현이자, 그 우월함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기인한 젠더폭력은 이성애 중심적인 젠더 규범성과 정상성에 기댄 채, 공포와 통제를 양산해내지만 이것은 폭력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한국사회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막연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안전에의 위기감은 유달리 취약하고 심약한 한국여성의 심리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마치

넓고 깊은 그물처럼 드리워져 있는 이 사회의 젠더폭력의 연쇄성과 지속성에 대한 표상인 것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탐구와 근절을 위한 실천과 노력은 바로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연적, 개별적, 일회적인 일탈로 폭력을 정의하며 신체적 상해로 폭력피해의 정도를 가늠해 온 행태에 대한 성찰, 성차별적 성규범에 기반한 피해여성에 대한 검열, 비난, 의심에 대한 포괄적 비판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속의 개인 강조, 공공선과 공공성 강화, 분배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화, 인권신장과 젠더평등의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비로소 젠더폭력의 축소내지는 근절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인숙·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85-118.
- 권인숙·이건정. 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학』 29(3): 181-218.
- 다카시, 사카이. 2011. 『통치성과 자유 -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오하나 옮김. 서울: 그린비.
-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 _____. 2012. “범죄통계.”
- 변혜정. 2004a.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pp. 45-73.
- _____. 2004b.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41-74.
- _____. 1999.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서울: 동녘.
-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미간행.
- 벡, 엘리자베트. 2005.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서울: 새물결.
- 신상숙. 2008.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 정치학 분석.” 『페미니즘연구』 8(2): 1-45.
- _____. 2007.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여성가족부. 2010. 『성폭력실태조사』.
- _____. 2007. 『성매매실태조사』.
- _____. 2010. 『성매매실태조사』.
- _____. 2013a. 『가정폭력실태조사』.
- _____. 2013b. 『성폭력실태조사』.
- 이미정 외. 201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2014. “여성·인권·폭력,” 베이징+20주

- 년 기념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2차 의제종합워크숍 발표문 자료집.
- 조주현. 1996.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138-179.
- 한겨레. ““죽인다”는 남편과 ‘협의’하라니…아내는 이혼소송 중 살해됐다.” 2013년 5월23일.
- 한겨레 21. ““25년 폭력’ 앞 살기 위한 저항이었지만…” 제1032호. 2014년 10월 20일.
- 한국여성민우회. 201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 및 분석: 2013년 1월 ~ 12월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서울: 한울.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11. “[모니터 보고서] <도가니> 그 후, 지상과 3사는 성폭력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 한국여성민우회. 2013. “성폭력상담 현황 및 분석.”
-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 “2012 대한민국 여성, 불안을 말하다, 절망범죄와 여성폭력.”
_____. 2014. “베이징+20주년 기념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2차 의제종합워크숍.” 발표문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http://gsis.kwdi.re.kr>
- 한국여성의전화. 1999.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
_____. 2014.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 허민숙. 2011. “가정폭력 담론의 재구축: 가정폭력 피해자 담론과 역량강화 연속선.” 『여성학논집』 28(1): 121-158.
- _____. 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2(2): 69-103.
- Burn, S. M. 2011. *Women across Cultures: A Global Perspectives*(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Bauman, Z.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Does the Richness of the Benefit Us All?)』. 안규남(역), 서울: 동녘.
- _____. 2006. 『유동하는 공포(Liquid Fear)』. 한규진(역). 서울: 산책자.

- Charlesworth, H. 1994. "What are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 J. Cook ed. *Human Rights of Wom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hodorow, N. J. 2011. *Individualizing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 Dutton, M. A. and L. A. Goodman. 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12): 743-756.
- Goldfarb, S. 2000.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Persistence of Privacy." *Ohio State Law Journal* 61(1): 1-87.
- Kirk, G. and M. Okazawa-Rey. 2010. *Women's Lives: Multicultural Perspectives*, 5th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Heise, L. L. 1999. "Violence, Sexuality, and Women's Lives." Parker, R. and P. Aggleton (eds.)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 Heo, M. S. 2010. "Women's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Framing: The Construction of Anti-Domestic Violence Legislation in South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3: 225-233.
- Hickman, S. E. and Muehlenhard, C. L. 2004. "College Women's Fears and Precautionary Behaviors Relating to Acquaintance Rape and Stranger Rape." pp. 394-408 in Kimmel, M. S and R. F. Plante (eds.). *Sexualities: Identities, Behaviors,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N. Y. 2011. "Negotiating the Boundaries of Nation, Christianity, and Gender: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Military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7(1): 34-66.
- Morrison, A. M. 2006, "Changing the Domestic Violence (Dis)Course: Moving from White Victim to Multi-Cultural Survivor."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aw Review* 39(3): 1061-1118.
- Robinson, F. 2003. "Human Rights and the Global Politics of Resistance: Feminist Perspectiv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S1): 161-180.
- Rofel, L. 1999. *Other Modernities*. 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eks, J.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Sexualities)』. 서동진, 채규형(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 White, J. W. and R. M. Kowalski. 1994. "Deconstructing the Myth of the Nonaggressive Woma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487-508.
- Williamson, E. 2010. "Living in the World of the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Negotiating the Unreality of Coercive Control." *Violence Against Women* 16(12): 1412-1423.

(2014. 10. 29. 접수, 2014. 12. 01. 심사, 2014. 12. 16. 채택)

Abstract

Gendered Violence and Gender Regime in the Neo-Liberal State of South Korea: Reconceptualization and Reconstruc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Lee, Na-Young, Chung-Ang University

Heo, Min Sook, Ewha Womans University

Given the argument that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forced prostitu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an individual, isolated, and infrequent incident. Based on the feminist perspective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compounded by women's low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tatus,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crucial elements and social conditions, which foster and reinforce gender-based violence. Such an approach allows us to explore key factors that created obstacles to realizing women's equality and to achieving women's human rights. In this vein, this paper scrutinizes the ways in which threatened or unstable masculin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neo-liberalism is clearly relevant to the appearance of coercive control against an intimate female partner for re-creating and maintaining imbalance of power between men and women. It also diagnoses that a hatred of women is one of the symptoms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rrelevant attempt for restoring traditional male privilege and prerogative. The very significant feature of gender-based violence as a backlash against changes in gender norms leads us to seek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in a substantial way. By clearly situated understand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this paper suggests that eradication of gendered violence depends on actualiz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interests, and enhancing democracy especially through distributive justice.

Key Words: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gendered violence, coercive control, neo-liberalism, women's human rights